

임시 공휴일(10.2) 지정 관련 조치계획

□ 검토배경

- 추석연휴(9.28_목~10.1_일) 및 개천절(10.3_화) 사이인 10.2_월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
 - 비상경제민생회의 시 발표(8.31), 국무회의 심의·의결 예정(9.5)

□ 주요내용

-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, 단체협약 및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

- 단체협약 제61조(유급휴일) 회사는 조합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및 기타 정보 또는 회사에서 정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.
- 복무관리지침 제23조(휴일) 1.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 의한 휴일

□ 향후 계획(국무회의 의결시)

- 휴일근무 운영 관련 기관 복무담당자 협조요청
 - 고객센터 및 부서별 현안 추진 등을 고려하여 휴일근무 운영
 - 교대근무자 및 현장근무자 근무표 사전 조정
-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른 사용인원(6,595명) 휴가 취소 및 변경
 - 복무시스템에 반영된 10.2(월) 연차휴가 일괄 취소 처리